

회원 관리 규정

제 주 문 화 원

< 회원 관리 규정 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2장의 규정에 의거 제주문화원(이하 “본원”이라 한다) 회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본원의 민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원의 회원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회원의 규정) 본원의 회원은 정관 제7조에 의하여 규정된 회원으로 하고, 정관 제7조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회원은 준회원으로 한다.

제4조(일반회원) 일반회원은 정관 제7조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, 정관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제9조의무를 가진다.

① 총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총회 개최시기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다음과 같이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.

다만, 총회 의결권 가운데 임원선출의 권(선거권, 피선거권)은 회원가입 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총회 개최시기	1. 1 ~ 3. 31	4. 1 ~ 12. 31
총회 의결권	전년도 연회비 납부회원	당해연도 연회비 납부회원

※ 단, 4.1 ~ 12.31 총회 개최 시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 기간까지 당해연도 연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② 일반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.

1. 본원에서 발행하는 인쇄물 및 각종 문화정보 제공
2. 본원 소장 각종 도서 열람
3. 본원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등 우선 초청
4. 회원을 위한 문화 향수 및 소양개발 프로그램 참여
5. 본원의 회원으로서 포상
6. 기타 본원에서 주최하는 각종사업 및 행사 참여 등

제5조(특별회원)

① 특별회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정관 제7조 ③항의 자.
2. 2022년 10월 25일 현재 제주시 외 거주자로서 일반회원으로 등록된 자.

② 특별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. 다만, 본 조의 ①항 2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한다.

③ 특별회원은 정관 제9조의 의무를 가지며, 본 규정 제4조 ②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.

제6조(준회원)

- ①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1. 문화학교, 문화대학, 실버합창단 등 본원 교육프로그램 수강생
 2. 본원 발간 책자 수령과 행사 안내만을 원하는 자
- ② 준회원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원장 앞으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.
- ③ 준회원은 총회를 통한 본원 운영 및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④ 준회원은 정관 제9조의 의무를 가지며, 다음 각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.
 1. 본원에서 발행하는 인쇄물 및 각종 문화정보 제공
 2. 본원 소장 각종 도서 열람
 3. 본원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등 초청
 4. 회원을 위한 문화 향수 및 소양개발 프로그램 참여
 5. 기타 본원에서 주최하는 각종사업 및 행사 참여 등

제7조(회원의 상벌) ① 회원으로써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② 회원으로써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 회원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,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제8조(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) 회원은 정관 제10호에 의거 자동 탈퇴 및 자격이 상실된다.

- ① 회원이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
- ② 회원이 사무국에 문자로 탈퇴 의사를 밝힌 경우
- ③ 회원이 정관 제9조 제3호를 이행치 않을 경우
- ④ 회원이 정관 제11조 ③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

제9조(회원의 의무 및 준수)

- ① 본원의 회원은 정관 제9조의 의무를 가진다.
 1.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
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
 3. 연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
- ② 본원의 회원은 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)

- ① 회원의 연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1. 일반회원
 - ㄱ. 원장 200만원
 - ㄴ. 부원장 100만원
 - ㄷ. 이사 30만원

ㄴ. 감사 30만원

ㄹ. 회원 5만원

2. 특별회원 5만원

3. 준회원 3만원

② 회원의 연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
③ 신입 회원의 연회비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재임이 아닌 신입이사(원장, 부원장 포함)는 제 부담금조로 오십만원(₩500,000)을 본원에 찬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1조(회계연도) 본원의 회원이 납부한 회비의 회계처리는 정부의 일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